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외〉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6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외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4. 6. 10.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Ⅲ. 검토의견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외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현 행	개정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u>국가연구개발사업</u>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현행과 같음> <삭 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지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¹⁾ 등의 연구기관이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²⁾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³⁾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1)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함.

2)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DB) 누리집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함.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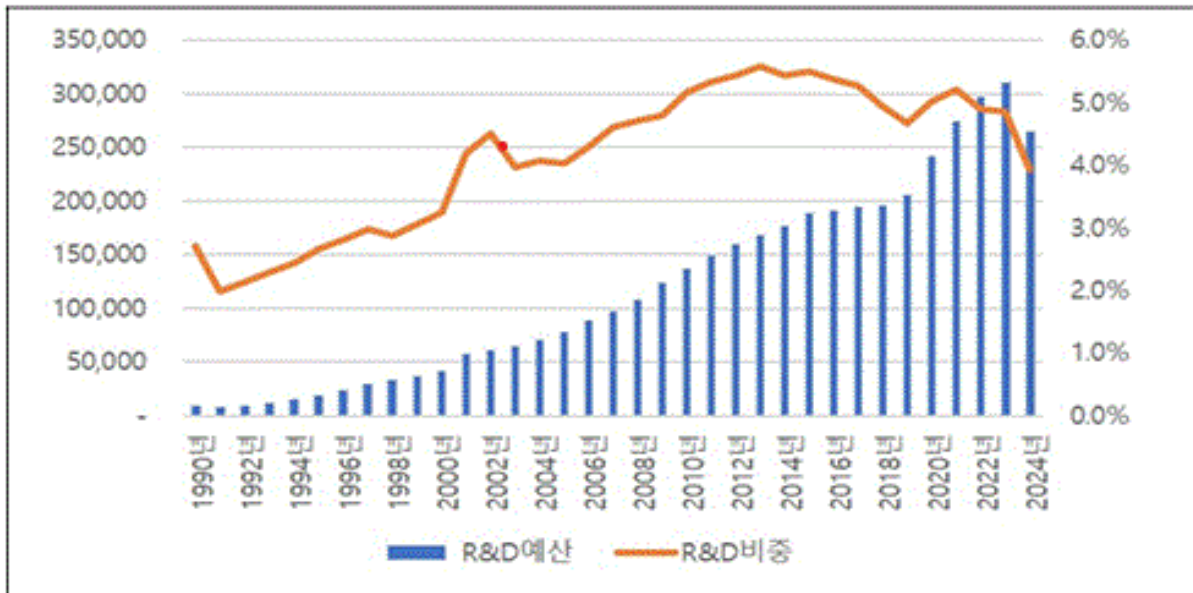
R&D 분야 예산은 2020~2023년 코로나19 대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에 따라 증가세를 보여 2023년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가 2024년에는 26.5조원으로 감소하였는데, 2023년 결산 기준 부처별 R&D 지원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9조 5,837억원), 산업통상자원부(5조 4,327억원), 방위사업청(5조 1,055억원), 교육부(2조 8,473억원),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4)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소벤처기업부(1조 7,700억원) 순으로 나타났음.⁵⁾

< 1990~2024년 R&D 분야 예산 및 정부총지출 중 R&D 분야 비중 추이 >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I」(국회예산정책처, 2024. 7, p.125.)에서 재인용

R&D 예비타당성조사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38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고 있음.⁶⁾

2018년부터 2023년까지 R&D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수는 총 387건으로, 이 중 155건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선정

5)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I』, 2024. 7, pp.125-126.

6) 2017년까지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였음.

「국가재정법」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된 사업 중 절반 수준인 78건만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사업 시행이 결정되었음.

< 최근 5년간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

(단위: 건,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청 건수		84	83	73	55	43	49
선정*	건수	36	31	37	23	16	12
	사업비**	234,951	277,111	252,786	204,880	91,153	79,411
통과	건수	18	18	16	9	9	8
	요구 사업비	121,944	134,204	153,205	112,968	59,801	43,588
	조정 사업비	65,959	79,307	98,728	38,187	42,709	24,134

*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사업 건수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철회 사업 포함

**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사업 사업비는 부처 요구액 기준

***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2건 중 1건은 현재 조사 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10.

이와 같이 R&D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R&D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⁷⁾

반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하여 R&D 투자가 소규모·단기 사업 중심으로 파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신

7) 국회예산정책처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약 25.8조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하였다고 분석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 NABO FOCUS 제73호(2024. 7. 26)

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R&D 예비타당성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건수와 선정건수는 감소한 반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평균 조사기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조사기간 >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청 사업	83	73	55	43	49
선정 사업	31	37	23	16	12
조사 완료 사업	29	36	23	15	9
평균 조사기간	6.4개월	7.3개월	7.7개월	8.5개월	6.9개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10.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R&D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R&D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빠르게 변하는 기술환경과 AI,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을 경쟁하는 국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R&D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R&D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고 사업 타당성 및 적정 소요예산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투자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사업기획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⁸⁾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2024년 5월 정부는 국가연구개발(R&D)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 추진을 발표하고,⁹⁾ 2024년 6월 「국가재정법」 개정, 사전 전문검토, 맞춤형 심사제도 등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음.¹⁰⁾

정부는 R&D 사업이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간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R&D 예비타당성조사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¹¹⁾ 다만, 현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구체적인 개정 문구 등을 협의하여 마련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정부입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8)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I』, 2024. 7, pp.135-138 참고

9) 관계부처합동,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면 개편」, 보도참고자료, 2024. 5. 17.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보도참고자료, 2024. 6. 4.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보도참고자료, 2024. 6. 4.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2. (생략)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생략) ② ~ ⑥ (생략)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u>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u>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u>	

문의처

02)6788-5151